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원전수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국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원전수출협력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4명 중 3명(5급 2명, 6급 1명)은 한시적으로 증원하고, 1명(4급 1명)은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의 직급을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하여 배정하며, 산업통상자원부 소속기관인 국가기술표준원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국가기술표준원 기술규제대응국장이 분장하던 개발도상국에 대한 표준 및 적합성평가 등 교육·훈련 지원 업무를 국가기술표준원 표준정책국장이 분장하도록 조정하며,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국가기술표준원의 정원 2명(5급 1명, 6급 1명) 및 광업등록사무소의 정원 1명(6급 1명)을 산업통상자원부로 각각 이체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의 정원 8명(5급 5명, 6급 2명, 7급 1명), 국가기술표준원의 정원 2명(5급 2명) 및 광산안전사무소의 정원 1명(9급 1명)을 각각 감축하는 내용으로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3. 12.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광물자원 분야의 국정과제 수행 및 현안 대응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산업정책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광물자원팀을 신설하면서, 석탄광물산업과의 명칭을 석탄산업

과로 변경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3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12. 8. ~ 12. 15.)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2항 중 “석탄광물산업과”를 “석탄산업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석탄광물산업과장”을 “석탄산업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석탄산업장기계획 등 석탄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2. 석탄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구조개선
3.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가격제도 운영
4. 석탄의 생산 및 석탄광업에 대한 기술지원과 육성·개발
5. 석탄·석탄가공제품의 수급안정·유통·비축 및 품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
6. 연탄공장의 이전(移轉)·단지화 및 공해 방지에 관한 사항
7. 대한석탄공사와의 업무 협조
8. 광산지역 진흥 및 대체산업 육성
9. 폐광지역 진흥지구 지정 및 개발 등에 관한 사항
10. 석탄산업, 폐광지역 개발 및 광산피해 방지에 관한 법령·제도 연구·개선

11. 광해방지기본계획 등 광해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12. 광산지역의 광해 방지 및 복구에 관한 사항
13. 광해방지사업금의 운용·관리 등에 관한 사항
14. 석탄 및 광해 관련 기술개발, 국제협력 지원 및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15. 한국광해광업공단과의 업무(국내외 광물자원개발 및 광물 비축·가공 관련 업무는 제외한다) 협조에 관한 사항
16. 그 밖에 국내 광물자원 개발기관과의 협력과 관련하여 다른 과 및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제10조의2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광물자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광물자원(석유·가스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개발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운영
2. 광물자원의 개발 관련 국제협력 지원 및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3. 광물자원 개발에 관한 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등 기반 구축
4. 광물자원개발 관련 재정 지원
5. 광물자원개발 관련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및 해외진출 등의 지원
6. 해외 광물자원개발 투자환경의 조사·분석 및 관련 정보의 제공
7. 해외 광물자원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및 국내외 자원개발통계의 생산 및 유통·관리
8. 국내 지질자료의 표준화 및 유통 체계 구축·지원

9. 해외 및 해양 광물자원의 개발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10. 국내 광물자원의 수급안정 및 개발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11. 해외 광물자원확보를 위한 전략적 협력 대응 및 국제 공동연구
12. 남북 간 광물자원 협력에 관한 사항
13. 한국광해광업공단과의 업무(국내외 광물자원개발 및 광물 비축·가공 관련 업무에 한정한다) 협조에 관한 사항
14. 석재·골재자원의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15. 광업조정위원회의 운영
16. 국내외 광물자원 개발 관련 정책 및 조직, 투자제도 등의 조사 및 개선
17. 광산물 비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8. 광업 및 광업권에 관한 법령·제도의 연구·개선
19. 해저광물자원 개발에 관한 법령·제도의 연구·개선
20. 광산(석유·가스 광산은 제외한다) 안전관리대책의 수립·추진 및 관련 법령·제도의 연구·개선

제10조의3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 중 “플랜트·설비”를 각각 “플랜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그 밖에 원자력 발전 플랜트·설비 및 기술의 수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8조제4항제13호를 제1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개발도상국 등 지원을 위한 표준 및 적합성평가 관련 교류·협력 사업에 관한 사항

14. 개발도상국 등 지원을 위한 표준 및 적합성평가 교류·협력 사업 관련 유관기관 및 중앙행정기관 간 협조체계 구축

15. 개발도상국 등 지원을 위한 표준 및 적합성평가 교류·협력 사업 관련 콘텐츠 개발, 전문가 육성 등 국내 기반 구축

제21조의2제6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0장에 제3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2(원전수출협력과) ① 원전수출협력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원전수출협력과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별표 2의 동부광산안전사무소의 관할구역란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표의 남부광산안전사무소의 관할구역란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별표 3 중 총계 “960”을 “954”로 하고, 일반직 계 “949”를 “943”으로 하며,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통계사무관·환경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보건사무관·사서사무관·기상사무관·사회복지사무관·농업사무관·임업사무관·수의사무관·의료기술사무관·식품위생사무관·의무사무관·약무사무관·간호사무관·항공사무관·부감사관·공업연구관·학예연구관·편사연구관·농업연구관·임업연구관·해양수산연구관·기상연구관·보

건연구관·환경연구관 또는 시설연구관 “73”을 “72”로,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통계사무관·환경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보건사무관·사서사무관·기상사무관·사회복지사무관·농업사무관·임업사무관·수의사무관·의료기술사무관·식품위생사무관·의무사무관·약무사무관·간호사무관·항공사무관·방재안전사무관·부감사관·공업연구관·학예연구관·편사연구관·농업연구관·임업연구관·해양수산연구관·기상연구관·보건연구관·환경연구관 또는 시설연구관 “282”를 “278”로,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통계주사보·환경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방송통신주사보·사서주사보·기상주사보·사회복지주사보·농업주사보·의료기술주사보·항공주사보·방재안전주사보 또는 감사주사보 “61”을 “60”으로 한다.

별표 3의2 중 총계 “960”을 “954”로 하고, 일반직 계 “949”를 “943”으로 하며,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통계사무관·환경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보건사무관·사서사무관·기상사무관·사회복지사무관·농업사무관·임업사무관·수의사무관·의료기술사무관·식품위생사무관·의무사무관·약무사무관·간호사무관·항공사무관·부감사관·공업연구관·학예연구관·편사연구관·농업연구관·임업연구관·해양수산연구관·기상연구관·보건연구관·환경연구관 또는 시설연구관 “73”을 “72”로,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통계사무관·환경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보건사무관·사서사무관·기상사무관·사회복지사무관·

농업사무관 · 임업사무관 · 수의사무관 · 의료기술사무관 · 식품위생사무관 · 의무사무관 · 약무사무관 · 간호사무관 · 항공사무관 · 방재안전사무관 · 부감사관 · 공업연구관 · 학예연구관 · 편사연구관 · 농업연구관 · 임업연구관 · 해양수산연구관 · 기상연구관 · 보건연구관 · 환경연구관 또는 시설연구관 “307”을 “303”으로, 행정주사보 · 공업주사보 · 통계주사보 · 환경주사보 · 시설주사보 · 전산주사보 · 방송통신주사보 · 사서주사보 · 기상주사보 · 사회복지주사보 · 농업주사보 · 의료기술주사보 · 항공주사보 · 방재안전주사보 또는 감사주사보 “49”를 “48”로 한다.

별표 4 제1호 중 총계 “224”를 “220”으로 하고, 일반직 계 “224”를 “220”으로 하며, 행정사무관 · 사서사무관 · 공업사무관 · 환경사무관 · 시설사무관 · 방송통신사무관 · 방재안전사무관 · 공업연구관 · 환경연구관 · 시설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 “40”을 “37”로, 행정주사 · 사서주사 · 공업주사 · 환경주사 · 시설주사 · 전산주사 · 방송통신주사 · 방재안전주사 · 공업연구사 · 환경연구사 · 시설연구사 또는 보건연구사 “52”를 “51”로 하고, 같은 표 제2호 중 총계 “26”을 “25”로 하고, 일반직 계 “26”을 “25”로 하며, 행정주사 · 공업주사 · 시설주사 또는 전산주사 “8”을 “7”로 하고, 같은 표 제4호 중 총계 “36”을 “35”로 하고, 일반직 계 “36”을 “35”로 하며, 운전서기보 “4”를 “3”으로 한다.

별표 4의2 제1호 중 총계 “224”를 “220”으로 하고, 일반직 계 “224”를 “220”으로 하며, 행정사무관 · 사서사무관 · 공업사무관 · 환경사무관 · 시설사무관 · 방송통신사무관 · 방재안전사무관 · 공업연구관 · 환경연구관 · 시

설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 “42”를 “39”로, 행정주사·사서주사·공업주사·환경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방송통신주사·방재안전주사·공업연구사·환경연구사·시설연구사 또는 보건연구사 “50”을 “49”로 하고, 같은 표 제2호 중 총계 “26”을 “25”로 하고, 일반직 계 “26”을 “25”로 하며, 행정주사·공업주사·시설주사 또는 전산주사 “8”을 “7”로 하고, 같은 표 제4호 중 총계 “36”을 “35”로 하고, 일반직 계 “36”을 “35”로 하며, 운전서기보 “4”를 “3”으로 한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0조의2 및 부칙 제3조의 개정규정: 2024년 1월 1일
2. 별표 2의 남부광산안전사무소의 관할구역란의 개정규정: 2024년 1월 18일

제2조(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한시조직에 배정한 정원의 존속기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3항에 따라 한시조직에 배정된 별표 6 제2호의 정원 1명(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 1명)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6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3 및 별표 3의2의 정원 중 1명(서기

관 · 과학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통계사무관 · 환경사무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무관 · 방송통신사무관 · 보건사무관 · 사서사무관 · 기상사무관 · 사회복지사무관 · 농업사무관 · 임업사무관 · 수의사무관 · 의료기술사무관 · 식품위생사무관 · 의무사무관 · 약무사무관 · 간호사무관 · 항공사무관 · 부감사관 · 공업연구관 · 학예연구관 · 편사연구관 · 농업연구관 · 임업연구관 · 해양수산연구관 · 기상연구관 · 보건연구관 · 환경연구관 또는 시설연구관 1명)으로 본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광물자원팀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광물자원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광물자원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석탄산업과장이 분장한다.

[별표 6]

산업통상자원부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 정원표

(제39조제2항 및 제39조의2제2항 관련)

1. 원전전략기획관(준속기한: 2024년 12월 31일)

총계	1
일반직 계	1
고위공무원단	1

2. 원전수출협력과(준속기한: 2025년 12월 31일)

총계	4
일반직 계	4
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	1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통계사무관 · 환경사무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무관 · 방송통신사무관 · 보건사무관 · 사서사무관 · 기상사 무관 · 농업사무관 · 임업사무관 · 수의사무관 · 의료기술사무관 · 식품위생사무관 · 항공사무관 · 공업연구관 · 환경연구관 · 시설연 구관 또는 보건연구관	2
행정주사 · 공업주사 · 통계주사 · 환경주사 · 시설주사 · 전산주사 · 방송통신주사 · 사서주사 · 기상주사 · 농업주사 · 임업주사 · 수의 주사 · 해양수산주사 · 보건주사 · 의료기술주사 · 식품위생주사 · 항공주사 · 공업연구사 · 환경연구사 · 시설연구사 또는 보건연구사	1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의2(자원산업정책국) ① (생 략)	제10조의2(자원산업정책국) ① (현행과 같음)
② 자원산업정책국에 자원안보 정책과 · 석유산업과 · 가스산업 과 및 <u>석탄광물산업과</u> 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 · 과학기술 서기관 · 서기관 · 공업연구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한다.	② ----- ----- --- <u>석탄산업과</u> ----- ----- ----- -----.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 <u>석탄광물산업과</u> 장은 다음 사 항을 분장한다.	⑥ <u>석탄산업과</u> ----- -----.
1. <u>석탄산업장기계획 등 석탄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 시행</u>	1. <u>석탄산업장기계획 등 석탄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 시행</u>
2. <u>석탄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구조개선</u>	2. <u>석탄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구조개선</u>
3. <u>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가 격제도 운영</u>	3. <u>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가 격제도 운영</u>
4. <u>석탄의 생산 및 석탄광업에 대한 기술지원과 육성 · 개발</u>	4. <u>석탄의 생산 및 석탄광업에 대한 기술지원과 육성 · 개발</u>
5. <u>석탄 · 석탄가공제품의 수급 안정 · 유통 · 비축 및 품질관 리 등에 관한 사항</u>	5. <u>석탄 · 석탄가공제품의 수급 안정 · 유통 · 비축 및 품질관 리 등에 관한 사항</u>
6. <u>연탄공장의 이전(移轉) · 단 지화 및 공해 방지에 관한 사</u>	6. <u>연탄공장의 이전(移轉) · 단 지화 및 공해 방지에 관한 사</u>

항

7. 대한석탄공사 및 한국광해관리공단과의 업무 협조
8. 광산지역 진흥 및 대체산업 육성
9. 폐광지역 진흥지구 지정 및 개발 등에 관한 사항
10. 석탄산업, 폐광지역 개발 및 광산피해 방지에 관한 법령 · 제도 연구 · 개선
11. 광해방지기본계획 등 광해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 시행
12. 광산지역의 광해 방지 및 복구에 관한 사항
13. 광해방지사업금의 운용 · 관리 등에 관한 사항
14. 석탄 및 광해 관련 기술개발, 국제협력 지원 및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15. 국내외 광물자원(석유 · 가스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개발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 운영
16. 광물자원의 개발 관련 국제협력 지원 및 국내 이행에 관

항

7. 대한석탄공사와의 업무 협조
8. 광산지역 진흥 및 대체산업 육성
9. 폐광지역 진흥지구 지정 및 개발 등에 관한 사항
10. 석탄산업, 폐광지역 개발 및 광산피해 방지에 관한 법령 · 제도 연구 · 개선
11. 광해방지기본계획 등 광해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 시행
12. 광산지역의 광해 방지 및 복구에 관한 사항
13. 광해방지사업금의 운용 · 관리 등에 관한 사항
14. 석탄 및 광해 관련 기술개발, 국제협력 지원 및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15. 한국광해광업공단과의 업무 (국내외 광물자원개발 및 광물 비축 · 가공 관련 업무는 제외한다) 협조에 관한 사항
16. 그 밖에 국내 광물자원 개발 기관과의 협력과 관련하여 다른 과 및 팀의 주관에 속하지

한 사항

17. 광물자원 개발에 관한 기술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등 기
반 구축
18. 국내외 광물자원개발 관련
재정 지원
19. 국내외 광물자원개발 관련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및 해
외진출 등의 지원
20. 해외 광물자원개발 투자환
경의 조사·분석 및 관련 정
보의 제공
21. 해외 광물자원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및 국내외 자원개
발통계의 생산 및 유통·관리
22. 국내 지질자료의 표준화 및
유통 체계 구축·지원
23. 해외 및 해양 광물자원의 개
발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
24. 국내 광물자원의 수급안정
및 개발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25. 해외 광물자원확보를 위한
전략적 협력 대응 및 국제 공
동연구

않는 사항

26. 남북 간 광물자원 협력에 관한 사항

27. 한국광해광업공단과의 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

28. 석재·골재자원의 조사와 합리적인 개발에 관한 사항

29. 광업조정위원회의 운영

30. 국내외 광물자원 개발 관련 정책 및 조직, 투자제도 등의 조사 및 개선

31. 광산물 비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2. 광업 및 광업권에 관한 법령 · 제도의 연구 · 개선

33. 해저광물자원 개발에 관한 법령 · 제도의 연구 · 개선

34. 광산(석유·가스 광산은 제외한다) 안전관리대책의 수립 · 추진 및 관련 법령 · 제도의 연구 · 개선

35. 그 밖에 국내 광물자원 개발 기관과의 협력과 관련하여 다른 과 및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신 설>

⑦ 광물자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광물자원(석유·가스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개발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운영
2. 광물자원의 개발 관련 국제협력 지원 및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3. 광물자원 개발에 관한 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등 기반 구축
4. 광물자원개발 관련 재정 지원
5. 광물자원개발 관련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및 해외진출 등의 지원
6. 해외 광물자원개발 투자환경의 조사·분석 및 관련 정보의 제공
7. 해외 광물자원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및 국내외 자원개발 통계의 생산 및 유통·관리
8. 국내 지질자료의 표준화 및 유통 체계 구축·지원
9. 해외 및 해양 광물자원의 개발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10. 국내 광물자원의 수급안정
및 개발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11. 해외 광물자원확보를 위한
전략적 협력 대응 및 국제 공
동연구
12. 남북 간 광물자원 협력에 관
한 사항
13. 한국광해광업공단과의 업무
(국내외 광물자원개발 및 광
물 비축·가공 관련 업무에
한정한다) 협조에 관한 사항
14. 석재·골재자원의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15. 광업조정위원회의 운영
16. 국내외 광물자원 개발 관련
정책 및 조직, 투자제도 등의
조사 및 개선
17. 광산물 비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8. 광업 및 광업권에 관한 법령
· 제도의 연구·개선
19. 해저광물자원 개발에 관한
법령·제도의 연구·개선
20. 광산(석유·가스 광산은 제
외한다) 안전관리대책의 수립

	<u>· 추진 및 관련 법령· 제도의 연구· 개선</u>
제10조의3(원전산업정책국) ① ~ ③ (생략)	제10조의3(원전산업정책국)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원전수출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 -----.
1. 원자력 발전 <u>플랜트·설비</u> 및 기술의 수출 진흥 정책의 수립·시행	1. ----- <u>플랜트</u> ----- ----- -----
2. 원자력 발전 <u>플랜트·설비</u> 및 기술 수출 관련 협력사업의 발굴 및 이행 지원	2. ----- <u>플랜트</u> ----- ----- -----
3. 원자력 발전 <u>플랜트·설비</u> 및 기술 수출 관련 지원제도 개선 및 애로사항 해소	3. ----- <u>플랜트</u> ----- ----- -----
4. (생략)	4. (현행과 같음)
5. 원자력 발전 <u>플랜트·설비</u> 및 기술의 수출 진흥 관련 국가 간 협력 및 국제기구와의 협조	5. ----- <u>플랜트</u> ----- ----- ----- --
6. ~ 12. (생략)	6. ~ 12. (현행과 같음)
<u><신 설></u>	13. 그 밖에 원자력 발전 <u>플랜트·설비 및 기술의 수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u>
⑤·⑥ (생략)	⑤·⑥ (현행과 같음)
제18조(표준정책국) ① ~ ③ (생략)	제18조(표준정책국) ① ~ ③ (현행과 같음)

략)

④ 국제표준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2. (생략)

<신설>

<신설>

<신설>

13. (생략)

⑤ ~ ⑨ (생략)

제21조의2(기술규제대응국) ① ~

⑤ (생략)

⑥ 기술규제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개발도상국 등 지원을 위한

표준 및 적합성평가 관련 교류

· 협력 사업에 관한 사항

2. 개발도상국 등 지원을 위한

표준 및 적합성평가 교류·협

행과 같음)

④ -----
-----.

1. ~ 12. (현행과 같음)

13. 개발도상국 등 지원을 위한

표준 및 적합성평가 관련 교류

· 협력 사업에 관한 사항

14. 개발도상국 등 지원을 위한

표준 및 적합성평가 교류·협

력 사업 관련 유관기관 및 중

앙행정기관 간 협조체계 구축

15. 개발도상국 등 지원을 위한

표준 및 적합성평가 교류·협

력 사업 관련 콘텐츠 개발, 전

문가 육성 등 국내 기반 구축

16. (현행 제13호와 같음)

⑤ ~ ⑨ (현행과 같음)

제21조의2(기술규제대응국)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

<삭제>

<삭제>

<u>력 사업 관련 유관기관 및 중앙행정기관 간 협조체계 구축</u> 3. <u>개발도상국 등 지원을 위한 표준 및 적합성평가 교류·협력 사업 관련 콘텐츠 개발, 전문가 육성 등 국내 기반 구축</u> 4. <u>삭 제</u> 5. ~ 13. (생략) <u><신설></u>	<u><삭 제></u> 5. ~ 13. (현행과 같음) <u>제39조의2(원전수출협력과) ① 원전수출협력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u> <u>② 원전수출협력과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6과 같다.</u>
---	---

신 · 구정원대비표

[별표 3]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정원표(제35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960</u>	<u>954</u>	-6
·	·	·	
·	·	·	
일반직 계	<u>949</u>	<u>943</u>	-6
·	·	·	
·	·	·	
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통계사무관 · 환경사무 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 무관 · 방송통신사무관 · 보건사무관 · 사서사무관 · 기상사무관 · 사회복지 사무관 · 농업사무관 · 임 업사무관 · 수의사무관 · 의료기술사무관 · 식품위 생사무관 · 의무사무관 · 약무사무관 · 간호사무관 · 항공사무관 · 부감서관 · 공업연구관 · 학예연구			

관 · 편사연구관 · 농업연구관 · 임업연구관 · 해양수산연구관 · 기상연구관 · 보건연구관 · 환경연구관 또는 시설연구관	<u>73</u>	<u>72</u>	-1
.	.	.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통계사무관 · 환경사무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무관 · 방송통신사무관 · 보건사무관 · 사서사무관 · 기상사무관 · 사회복지사무관 · 농업사무관 · 임업사무관 · 수의사무관 · 의료기술사무관 · 식품위생사무관 · 의무사무관 · 약무사무관 · 간호사무관 · 항공사무관 · 방재안전사무관 · 부감사관 · 공업연구관 · 학예연구관 · 편사연구관 · 농업연구관 · 임업연구관 · 해양수산연구관 · 기상연구관 · 보건연구관 · 환경연구관 또는 시설연구관	<u>282</u>	<u>278</u>	-4

·	·	·	
·	·	·	
행정주사보 · 공업주사보 · 통계주사보 · 환경주사보 · 시설주사보 · 전산주사 보 · 방송통신주사보 · 사 서주사보 · 기상주사보 · 사회복지주사보 · 농업주 사보 · 의료기술주사보 · 항공주사보 · 방재안전주 사보 또는 감사주사보	<u>61</u>	<u>60</u>	-1
·	·	·	
·	·	·	

[별표 3의2]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정원표(제35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960</u>	<u>954</u>	-6
·	·	·	
·	·	·	
일반직 계	<u>949</u>	<u>943</u>	-6
·	·	·	
·	·	·	
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통계사무관 · 환경사무 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 무관 · 방송통신사무관 · 보건사무관 · 사서사무관 · 기상사무관 · 사회복지 사무관 · 농업사무관 · 임 업사무관 · 수의사무관 · 의료기술사무관 · 식품위 생사무관 · 의무사무관 · 약무사무관 · 간호사무관 · 항공사무관 · 부감서관 · 공업연구관 · 학예연구 관 · 편사연구관 · 농업연			

구관 · 임업연구관 · 해양 수산연구관 · 기상연구관 · 보건연구관 · 환경연구 관 또는 시설연구관	<u>73</u>	<u>72</u>	-1
.	.	.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통계사무관 · 환경사무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무 관 · 방송통신사무관 · 보 건사무관 · 사서사무관 · 기상사무관 · 사회복지사 무관 · 농업사무관 · 임업 사무관 · 수의사무관 · 의 료기술사무관 · 식품위생 사무관 · 의무사무관 · 약 무사무관 · 간호사무관 · 항공사무관 · 방재안전사 무관 · 부감사관 · 공업연 구관 · 학예연구관 · 편사 연구관 · 농업연구관 · 임 업연구관 · 해양수산연구 관 · 기상연구관 · 보건연 구관 · 환경연구관 또는 시설연구관	<u>307</u>	<u>303</u>	-4
.	.	.	

· 행정주사보 · 공업주사보 · 통계주사보 · 환경주사보 · 시설주사보 · 전산주사 보 · 방송통신주사보 · 사 서주사보 · 기상주사보 · 사회복지주사보 · 농업주 사보 · 의료기술주사보 · 항공주사보 · 방재안전주 사보 또는 감사주사보 · ·	· <u>49</u> · ·	· <u>48</u> · ·	-1
--	---	---	-----------

[별표 4]

산업통상자원부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36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1. 국가기술표준원 공무원 정원표			
총계	<u>224</u>	<u>220</u>	-4
일반직 계	<u>224</u>	<u>220</u>	-4
·	·	·	
·	·	·	
행정사무관·사서사무관 · 공업사무관·환경사무관·시설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방재안전사무관·공업연구관·환경연구관·시설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	<u>40</u>	<u>37</u>	-3
행정주사·사서주사·공업주사·환경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방송통신주사·방재안전주사·공업연구사·환경연구사·시설연구사 또는 보건연구사	<u>52</u>	<u>51</u>	-1
·	·	·	

.	.	.	
2. 광업등록사무소 공무원 정원 표			
총계	<u>26</u>	<u>25</u>	-1
일반직 계	<u>26</u>	<u>25</u>	-1
.	.	.	
.	.	.	
행정주사 · 공업주사 · 시 설주사 또는 전산주사	<u>8</u>	<u>7</u>	-1
.	.	.	
.	.	.	
4. 광산안전사무소 공무원 정원 표			
총계	<u>36</u>	<u>35</u>	-1
일반직 계	<u>36</u>	<u>35</u>	-1
.	.	.	
.	.	.	
운전서기보	<u>4</u>	<u>3</u>	-1
.	.	.	
.	.	.	

[별표 4의2]

산업통상자원부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36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1. 국가기술표준원 공무원 정원표			
총계	<u>224</u>	<u>220</u>	-4
일반직 계	<u>224</u>	<u>220</u>	-4
·	·	·	
·	·	·	
행정사무관·사서사무관 · 공업사무관·환경사무관·시설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방재안전사무관·공업연구관·환경연구관·시설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	<u>42</u>	<u>39</u>	-3
행정주사·사서주사·공업주사·환경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방송통신주사·방재안전주사·공업연구사·환경연구사·시설연구사 또는 보건연구사	<u>50</u>	<u>49</u>	-1
·	·	·	

.	.	.	
2. 광업등록사무소 공무원 정원 표			
총계	<u>26</u>	<u>25</u>	-1
일반직 계	<u>26</u>	<u>25</u>	-1
.	.	.	
.	.	.	
행정주사 · 공업주사 · 시 설주사 또는 전산주사	<u>8</u>	<u>7</u>	-1
.	.	.	
.	.	.	
4. 광산안전사무소 공무원 정원 표			
총계	<u>36</u>	<u>35</u>	-1
일반직 계	<u>36</u>	<u>35</u>	-1
.	.	.	
.	.	.	
운전서기보	<u>4</u>	<u>3</u>	-1
.	.	.	
.	.	.	